

울산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나14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영욱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승찬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9. 19.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2627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2/9 지분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2/9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D은 망인으로부터 신희집 마련을 위해 2011. 3.경 190,402,420원을 증여받아 울산 남구 H아파트 I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D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D의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 B는 1995년경부터 약 12년 동안, 피고 C는 2000년경부터 약 1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은 월급을 망인에게 주고 망인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는바 이로써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D의 구체적 상속분을 피고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D와 따로 살면서 교류가 없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D은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D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D의 채무초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D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D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들인 피고들과 D이 있고, G의 법정상속분은 $\frac{3}{9}$, 나머지 피고들과 D의 법정상속분은 각 $\frac{2}{9}$ 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분할협의는 2021. 5. 28. 이루어졌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을 제16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합계 364,293,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83,293,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81,000,000)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및 D의 구체적 상속분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 D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을 제1 내지 3,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1. 1. 31. 울산 남구 H아파트 I호의 중개보조인인 J에게 70만 원을, 2011. 2. 10. 2,000만 원을 매도인 K에게 각 이체한 사실, 망인의 배우자인 G가 2011. 3. 30. 자신의 계좌에서 110,702,420원을 출금한 사실, D이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위 H아파트 I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2011. 3. 30.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G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L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H아파트를 담보로 한 G 명의의 별도의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G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망인이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망인이 J, K에게 입금한 2,070만 원을 장차 상속인이 될 D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D에게 위 H아파트 I호의 매입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D, G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들의 기여분을 각 50%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을 제2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1996. 12. 9.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들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는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점, ③ 이후 2022. 10. 17. 작성된 기여분 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피고들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들의 기여분액을 인정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없는 점, ④ 피고 B이 망인의 공사대금 1억 2,25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부분은 1998. 2.부터 2003. 12.까지 매달 140만 원 가량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그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합산한 것이어서 그 총액이 망인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 지분의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송인철, 판사 오수진

부동산 목록

1. 울산광역시 중구 대 175.4㎡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백골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91.55㎡, 2층 76.75㎡

부속 볼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및 창고 3.95㎡ 팔.

